

제5차 재정운영위원회



회 의 록

2019. 9. 25.

국민건강보험
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



I. 개요

1. 일 시 : 2019. 9. 25.(수), 14:00 ~ 16:00

2. 장 소 :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

3. 출석현황 : 재적위원 30명 중 22명 출석 ... 위원 18명, 대리인 4명

가. 출석위원 : 22명

○ 위 원 : 18명

- 최미영위원, 유주동위원, 김경자위원, 변희영위원, 추광호위원, 김동욱위원, 강정현위원, 박진천위원, 정월자위원, 박용현위원, 권오복위원, 김진현위원, 김연숙위원, 이익희위원, 윤희숙위원, 최병호위원, 윤영호위원, 정영호위원

○ 대리인 : 4명

- 류기섭위원(김일정), 정만화위원(김도수), 이기일위원(김도균), 김선민위원(장용명)

나. 결석위원 : 8명

- 이태희위원, 박재근위원, 신영숙위원, 백대용위원, 이동식위원, 류상민의원, 최성은위원, 김양균위원

II. 회의내용

1. 보고사항

-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당면적용 시행결과 보고
- 체납보험료 징수 및 결손처분 관리

2. 부의안건

- 의안 1호 : 체납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의 건
※ 소관부서 : 통합징수실
- 의안 2호 : 건강보험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의 건
※ 소관부서 : 급여관리실
- 의안 3호 : 장기요양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의 건
※ 소관부서 : 요양심사실

III. 회의 결과(요지)

1

의안 제1호

‘체납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의 건’

① 안건 주요내용

-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(결손처분) 및 공단 회계규정 제16조 등에 따라 사망, 행방불명, 해외이주, 의료급여수급자, 파산 등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, 건강보험료 69,227건 110,504,459,876원과 장기요양보험료 66,554건 6,327,118,964원을 결손처분 하고자 함.

② 의견 요지

- 해당 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

③ 의결 결과

- 원안대로 의결

2

의안 제2호

‘건강보험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의 건’

① 안전 주요내용

-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(결손처분) 및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완성, 파산 또는 해산, 행방불명, 사망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, 해외이주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,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기타징수금 200,118건, 174,579,708,804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함.

② 의견 요지

- 해당 안전에 대한 이견 없음

③ 의결 결과

- 원안대로 의결

3

의안 제3호

‘장기요양 체납 기타징수금 결손처분의 건’

① 안전 주요내용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(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),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(결손처분) 및 공단 회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망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, 경제적빈곤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, 채권을 확보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기타징수금 102건 367,729,55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함.

② 의견 요지

- 해당 안전에 대한 이견 없음

③ 의결 결과

- 원안대로 의결